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기존 수도시설 운영,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함

수도용 자재, 제품의 검사 관련하여 검사 결과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관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오타를 수정하고 표준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기술검토 전문기관 지정(제15조의2 신설)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기술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하도록 함

나. 수도시설의 관리 법정 교육 주기 단축(제52조 개정)

- 1) 기존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주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 주기 방법을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다. 표준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제60조 개정)

- 1) ‘표준설명서’가 ‘표준시방서’로 명칭이 변화함에 따라 ‘표준시방서’로 수정함

라.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규정 신설(제67조제2항 신설)

- 1)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사무 일부를 집행기관인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국유재산 관리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민간위탁 규정 이관(제67조제5항 신설)

-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 중인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수도법으로 이관하고, 사용료 징수 업무에 수반되는 과오납금 반환, 현장점검을 기반으로 한 대집행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별표 개정([별표1의2]의 비교, [별표1의4] 개정)

- 1) “폐놀”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페놀류”로 수정하고 통지기간 관련 규정에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사항 명시하고자 함

사. 공장설립제한 지역 규제 합리화(부칙 2010.11.26. 제4조의2 개정, 제5조의2 신설)

- 1) 기존산단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장 신설·증설·업종 변경 관련한 규제 합리화하고 '10.11.26일 이후 공장설립제한지역 신규 지정 시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동일한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미포함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5년”을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대상자 :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

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0조제4호 중 “표준설명서”를 “표준시방서”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와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67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와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

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
 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
 수
 러.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머.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버.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
양도·무상귀속 협의

별표 1의2 제2호하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폐놀”을 “폐놀류”
로 한다.

별표 1의4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가. 비점오염원 및 사고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 점오염원이 전
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자연유하로 배출되는 기존 산업단지
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공장. 이 경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 조건을 갖춘 기존 산업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
치) 2010년 11월 26일 이후에 취수시설이 추가 설치되어 제14조의2
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취수시설 공고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생 략)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u>5년</u>마다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	<u>제15조의2(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 ----- ----- ----- <u>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u>-----

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 ⑦ (생략)

-----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대상자 :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한만료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수도 관계 시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 10. (생략)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2. (생략)

<신설>

③·④ 삭제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60조(업무 등)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표준시방서-----

5. ~ 10. (현행과 같음)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와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⑤ -----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 10. (생략)

<신설>

-----.

1. ~ 10. (현행과 같음)

1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와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
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
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
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 「국유재산법」 제40조에

⑥ ~ ⑧ (생략)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
한 협의
머.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버.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⑥ ~ ⑧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권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지정·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개발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권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부칙

[illegible]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
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
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
두 갖춘 공장을 신설 또는 증
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
위

가. 비점오염원 및 사고로 유
출되는 오수·폐수 등 점오
염원이 전량 상수원이 없
는 수계에 자연유하로 배
출되는 기존 산업단지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업
종을 변경하려는 공장. 이
경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지방 환
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 조건을 갖춘 기존 산업
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
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제5조 (생 략)

<신 설>

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

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

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이

후에 취수시설이 추가 설치되어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취수시설 공고

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

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취수시설 공고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

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

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연 락 처	(02) 201 - 7121